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12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임호선 · 이상식 · 차지호
박선원 · 정준호 · 박정현
정춘생 · 안도걸 · 위성곤
김한규 · 윤준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0호·제22호·제37호·제38호·제4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5.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6.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7.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8.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9.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상습범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1. <u>(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 건조물(建造物) · 배 ·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u>	<u><삭 제></u>
2. <u>(흉기의 은닉휴대)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u>	<u><삭 제></u>
3. <u>(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u>	<u><삭 제></u>

한 사람

4. ~ 19. (생략)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생략)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 36. (생략)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4.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1. (현행과 같음)

<삭제>

23. ~ 3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
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40. (생략)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
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
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1.·2. (생략)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
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
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
해한 사람

4. (생략)

<신설>

39·40.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신 설>

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 건조물(建造物) · 배 ·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신 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신 설>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신 설>

4. (음주소란 등) 공회당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5.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
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
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
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
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6.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
람
7.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
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8.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
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
여 하는 사람

<u><신 설></u>	<u>9.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u>
<u>③ (생 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신 설></u>	<u>제10조(상습범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u>
	<u>② 제1항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